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가합52991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한국무역보험공사

피고1. 유한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5. 10. 2.

판결 선고2015. 11. 13.

주 문

1. 피고 유한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744,720원 및 그 중 417,734,830원에 대한 2015. 3. 18.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11. 25. 접수 제552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A,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유한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744,720원 및 그 중 417,734,830원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A 사이의 수입보험약정 체결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1) 원고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이고,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목재를 수입하여 가공 등을 거쳐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4. 6. 16. 피고 회사의 부탁으로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인수한도액을 미화 50만 불로 하는 내용의 수입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수입보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 등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보험계약의 내용 등)

① 본인(피고 회사) 및 보증인(피고 B)이 공사(원고)에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보험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인수한도	미화 50만 불
보험계약자	국민은행 군산 부·지점
보험증권 번호	D

"인수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채무자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 등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말하며, 보험계약 성립권이 결제되는 경우 결제된 금액만큼 한도가 살아나는 회전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건별 승낙의 경우에는 회전방식으로 운용되지 않음

"보험계약자"는 공사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하여 수입자금을 대출하거나 또는 수입거래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함

제3조(채무이행의무)

본인과 보증인은 보험계약자가 공사에 가입한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금지급일 전까지 대출금 등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공사로부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제6조(보험금 지급금 등의 상환)

① 본인 및 보증인은 공사가 제2항 제1호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금융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공사에 상환하겠습니다.

1. 지급보험금(공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약정이자 포함)
2. 보험금 취득으로 공사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② 본인 및 보증인은 제1항의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공사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공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공사에 지급하겠습니다.

제21조(연대보증인)

① 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본인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나. 원고의 수입보험증권발급 등

원고는 이 사건 수입보험약정에 따라 2014. 6. 23. 보험인수한도액을 미화 50만 불, 보험기간을 2014. 6. 23.부터 2015. 6. 22.까지로 각 정하여 국민은행을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는 수입보험(금융기관용)증권을 발행하였고, 국민은행은 그 무렵 위 수입보험증권을 담보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여신한도(지급보증한도)를 미화 50만 불로, 변제기한을 2015. 6. 22.로 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여신과목 : 포괄외화지급보증)을 체결하였다.

다. 보험사고 발생

국민은행이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를 위해 지급보증한 수입거래에서 피고 회사가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수입어음의 결제를 하지 못하자, 국민은행은 2014. 12. 16. 그 금액 상당을 대위 지급한 후 2015. 1. 7. 원고에게 위와 같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으로 인한 구상금채권 발생

1) 원고는 2015. 3. 17. 국민은행에게, 피고 회사가 당시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국민은행의 대위 지급과 관련하여 국민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구상원리금채무 전액인 417,734,830원을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위 수입보험약정서 제6조 제2항의 '공단(원고)이 정하는 연체이율'은 연 11%이다.

2) 원고는 2015. 1. 27.경부터 2015. 3. 16.경 사이에 위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합계 3,009,890원(= 2건의 부동산가압류 관련 변호사 보수 및 신청비용, 갑 제5호증의 1, 2)을 지출하였다.

마. 피고 B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처분행위

피고 B은 2014. 11. 19. 당시 그의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000만 원에 피고 C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4. 11. 25.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4.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420,744,720원(= 위 보험금액 417,734,830원 + 위 채권보전비용 3,009,890원) 및 그 중 보험금 417,734,830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5. 3. 18.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6. 18.까지는 이 사건 수입보험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인 연 11%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5. 6.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여부

1) 피보전채권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①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입보험약정 및 이 사건 보험금 지급 등에 의하여 2015. 3. 17. 피고 회사에 대하여 420,744,720원의 구상금채권 및 피고 B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연대보증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4. 11. 19.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4. 11. 19. 당시 비록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채권의 성립에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수입보험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이 존재하고 있었고,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4. 11. 19.로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4. 12. 16. 보험사고가 발생한 점, 보험사고 발생 직후의 국민은행 실사 결과 피고 회사에는 직원 및 목재가 없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③ 실제로 원고가 2015. 3. 17. 국민은행에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 B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B이 피고 C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요지

피고 C는, 자신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수하였다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을다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 공인중개업자의 관여 없이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매매대금 9,000만 원은 계약 체결 당일 일시불로 지급된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매매대금은 2014. 11. 19. 전액 지급되었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14. 11. 25. 경료되었는바,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서로 상환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그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의 과정이나 E의 부동산 매매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④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하나인 군산시 F 답 2132㎡'을 2006. 7. 19.부터 공유해 온 사이인 점, ⑤ 피고 C는 피고 B이 운영하는 피고 회사의 옆 부지에서 피고 회사와 동일한 목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다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11. 25. 접수 제552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기영

판사정순열

판사이호연

별지

1)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이 일부 기각된 것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일 뿐이고, 또한 위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다투지도 않았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는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한다.